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945
----------	------

2021. 11. 2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28. 고병국 의원
2. 회부일자: 2021. 11. 1.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1. 11. 29.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고병국 의원)

###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상 근거는 불비한 상황임. 이에 조례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신설).
-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자치구의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예산지원 근거와, 시장이 설치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 2.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외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는 5개뿐으로, 이 개정안은 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자치구가 직접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생략)	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제11조(----- ----- 운영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	② ----- -----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u>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u> -----
--	------------------------------------	--

### 3.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설치하는 집수리 지원센터만 규정하고 있으나, 집수리 지원 사무는 현장밀착형으로 자치구 사무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외에도,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규정코자 하고,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1.10.6.) 심의 결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있으나, 센터의 위탁사무에 포함된 집수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는 사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으나<sup>1)</sup>, 이 개정조례안으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 안 제11조 제목을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안 제11

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사무인 집수리지원센터로 시장이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외 개별법령과 조례에도 위탁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시의회 법률자문 결과 또한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제시됨.

조제2항 중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을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함.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945
----------	------

제안일자 : 2021. 11. 29.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수정이유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자치구가 직접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11조 제목을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 안 제11조제2항 중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을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목을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을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u>운영</u>)</p> <p>① 시장은 서울시내 <u>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지원</u>을 위해 <u>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u>를 <u>설치·운영</u>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u>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u>를 <u>설치·운영</u>하는 경우 <u>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u>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u>중앙 집수리 지원센터</u>를 <u>효율적으로 운영</u>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u>법인이나 단체</u> 등에 <u>위탁</u>할 수 있다.</p>	<p>제11조(----- ----- <u>운영 등</u>)</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u>설치</u> <u>하거나 집수리 지원</u> <u>사무를 수행하는 경우</u>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p> <p>③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u>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u>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u> ① 시장은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